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60
----------	-----

2011년 6월 29일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23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2010.6.29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도시계획국장 김병하)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곡산업단지 조성목표, 유치업종 및 입주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중소·벤처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창업지원, 인력양성, 산학협력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규정을 마련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중요 정책사항 심의,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사를 위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3. 조례제정 추진경위

- 2011.04.06 :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
- 2011.04.14 : 입법예고(20일, 서울특별시 공고 2011-725호)
 - 물관리국, 진보신당 서울특별시당 의견제시
- 2011.04.18 : 행정규제 검토결과 통보(법무담당관, 의견없음)
 - 산업단지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을 뿐,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는 아님.
- 2011.05.16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개선권고)
 - 내·외부위원 구성비율, 연임차수 제한, 임명·위촉제한 규정 신설
- 2011.06.01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4. 마곡지구 개요

- 개요
 - 목 적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서울의 산업경쟁력 강화
 - 위 치 : 강서구 마곡·가양동 일대 366만^m²
 - 산업단지 : 111만^m²(공급 74만^m²)¹⁾
- 추진경위

2005.12.20	: 마곡R&D시티(MRC) 개발구상 발표
2007.12.28	: 마곡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
2008.12.30	: 마곡일반산업단지 지정 고시
2009.06	: 마곡산업단지 조성 및 마케팅 추진계획 수립
2009.09.30	: 단지조성공사 착공(2공구 착공 2010.2.1)
2010.02.11	: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2010.08	: 「마곡산업단지 업종배치방안」 연구용역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기술산업(IT·BT·GT·NT) 및 융·복합기술산업 50:50- 전략적 유보지 확보, 다양한 공공선도시설(4개) 조기도입
2010.09.30	: 실시계획 변경 인가
2010.12.31	: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2011.03	: 「마곡 R&D Tower 건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연구개발공간 임대, 공동연구센터 및 회의장 활용
2011.05.12	: 워터프론트 계획변경(안) 발표 (기자설명회)
2011.06~	: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추진

※ 토지이용계획은 붙임과 같음.

- 1)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마곡지구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에 대해 의제 처리한 것임.

- 현재 사업단계 : 단지조성 10% 완료(2014완공예정)
- 향후 추진계획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고시 ⇒ 마곡산업단지 처분계획서를 작성(SH공사)
⇒ 마곡산업단지 입주신청 공고 ⇒ 입주심사 및 입주대상자 선정(2011년 하반기)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 나. 예산조치 :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6.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조례안의 주요내용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곡지구내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제1조~제4조), 마곡산업단지 조성목표 및 입주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제5조~제9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10조~제12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13조~제20조)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의 유사 조례인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 지원조례」와 같은 구성이나, 마곡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이므로 DMC와 달리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첫째, 마곡산업단지 조성목표, 유치업종 및 입주절차에 대한 규정임 (안 제5조부터 제9조). 마곡산업단지의 조성목표로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분명히 하였고, 이에 따른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원칙으로 하되,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선정은 시장이 공고하는 입주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음.

- 둘째, 재정이 건전하고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마곡산업단지 분양면적의 30% 범위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셋째,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지정·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근거, 기타 국내외 기업의 입주 촉진 및 투자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창업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음(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넷째,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피규정, 회의운영, 실무위원회 설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

- 첫째, 안 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임.

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내에 국내외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마곡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이는 입주기업 지원근거 규정 중 그 밖의 지원사업을 규정한 것임. 일반적으로 지원,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은 서술식으로 나열한 것보다는 열거방식으로 함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열거 형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둘째, 안 제14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임.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운영 및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의원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셋째, 안 제19조(실무위원회)에 대한 의견임.

제1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중 정책심의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정책심의위원회 만으로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실제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하면, 본 조례안은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입주기업 유치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상위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판단됨. 다만, 그 밖의 지원사항에 대한 열거방식,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실무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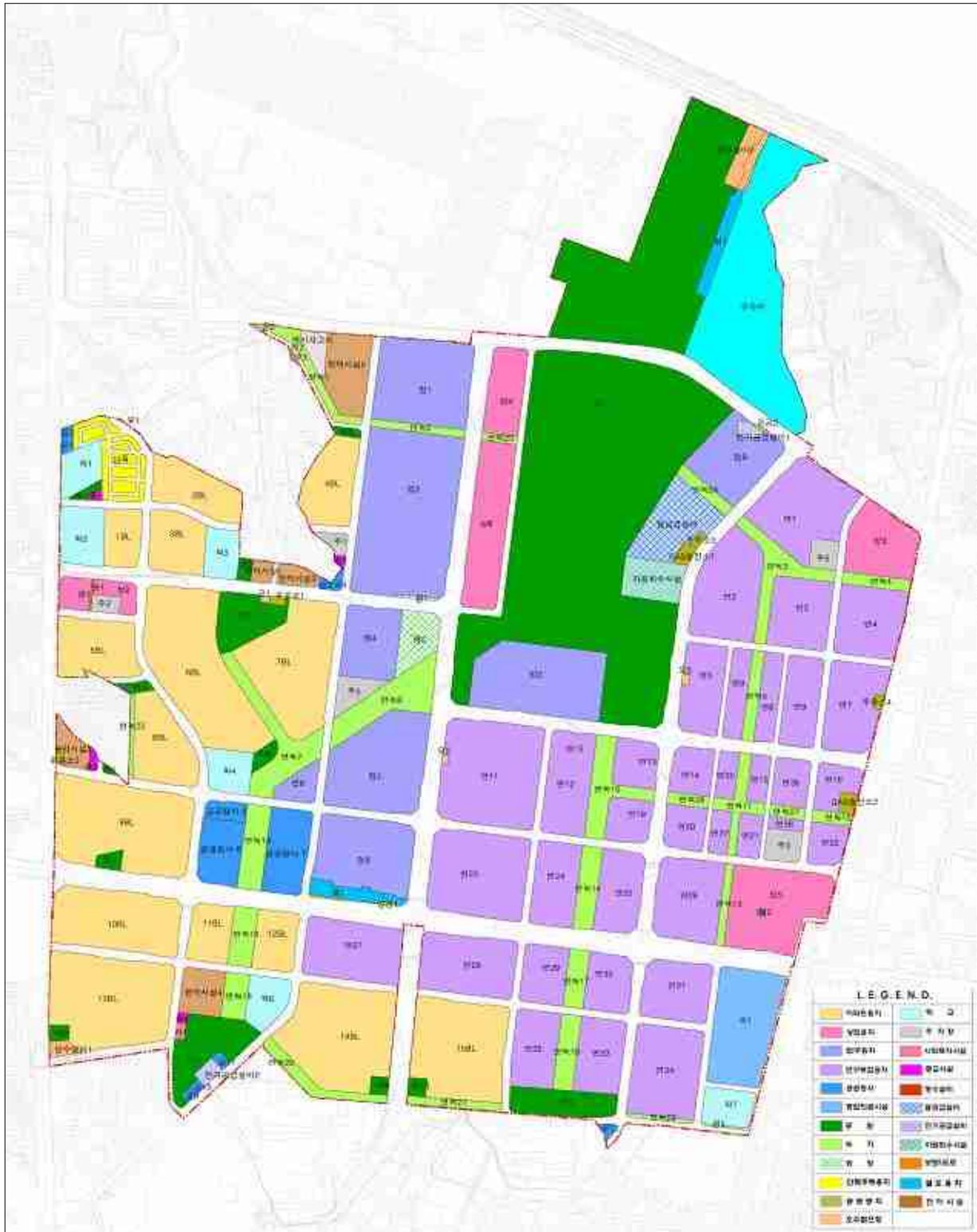
8. 토론요지 : 생략

9.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10.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11.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붙임 : 마곡지구 토지이용계획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360
------	-----

2011년 6월 29일
도시관리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입주기업 지원근거 규정 중 제12조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토록 하고,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에 서울특별시의원을 포함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임.

2. 수정주요내용

- 조례안의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0조 본문 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으로 수정함. (안 제10조)
- 조례안의 입주기업 지원근거 규정 중 그 밖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으로 수정함. (안 12조)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중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수정함. (안 제14조)
- 정책심의위원회만으로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운영세칙을 통해서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실무위원회를 삭제함. (안 제19조)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 각호 외의 본문 중 “지원”을 “입주촉진”으로 한다.

안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
3.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의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 제14조제4항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로 한다.

안 제19조는 삭제하고 안 제20조를 안 제19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 기업과 벤처기업의 <u>지원을</u>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 1.~3. (생략)</p>	<p>제10조(중소·벤처기업 지원) <u>입주촉진</u>을 1.~3. (현행과 같음)</p>
<p>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내에 국내외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u>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② 시장은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u>창업지원, 산학협력,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마곡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u></p>	<p>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 3.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의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③ (생략) ④ 외부위원은 10명 <u>이내</u>로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14조(위원회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이내</u>로 <u>서울특별시 의원 2명과</u></p>
<p>제1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u>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삭제〉</p>
<p>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9조(운영세칙)</p>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곡산업단지”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98호(2008.12.30)로 마곡도시개발구역 중 일반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강서구 가양동 292답 일원에 위치한 ‘마곡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IT)”이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3. “바이오산업(BT)”이란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진단·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산업(GT)”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나노산업(NT)”이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나노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제조, 생산,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연구개발업”이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말한다.
7. “입주자”란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모든 국내외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사업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마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스에이치 공사)를 말한다.
1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곡산업단지의 입주자 유치와 입주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목표) 마곡산업단지는 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하여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R&D)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6조(유치업종) 유치업종은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IT), 바이오산업(BT), 녹색산업(GT), 나노산업(NT)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업을 우선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

제7조(입주계약) 마곡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은 시장이 공고하는 입주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이 건전하고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입주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분양면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마곡산업단지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제9조(분양가격)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하며, 이 경우 분양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필지나 구역별로 분양가격을 차등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설립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 집적시설
3.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11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그 밖의 지원사업) 시장은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연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
2. 기술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사업
3.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의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마곡산업단지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2. 제6조에 따른 우선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입주기준 및 입주자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입주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용역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담당과장이 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